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91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 조지연·신성범·박충권

박준태 · 김위상 · 조배숙

장동혁 · 최수진 · 구자근

박수민 • 이달희 • 강승규

최은석 · 김형동 · 주호영

김소희 · 김재섭 · 김정재

강대식 • 이인선 • 임이자

우재준 · 엄태영 · 김상욱

이성권 • 박상웅 • 강명구

유용원 • 권영진 • 박덕흠

박정하 • 김장겸 • 정점식

김용태 · 정희용 · 최보윤

한지아 · 신동욱 · 김승수

곽규택 • 김성원 • 서범수

이양수 · 서명옥 · 강선영

고동진 • 조승환 • 유영하

박성훈 · 임종득 · 한기호

김기웅 · 최형두 의원

(5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물질의 독

성,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을 심사·평가한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른 현행법 시행규칙은 입자상물질, 일산화탄소, 석면 등 을 대기오염물질로 열거하고 있으며,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 정의하고 있음.

입자상물질인 먼지는 배출 당시 고체·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먼지와,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응축되는 응축성 먼지로 구분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먼지를 측정·관리함에 있어 여과성 먼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응축성 먼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의 배출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되는 '백연'을 분석한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나타나 이에 대한연구·조사 및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현행법상 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응축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7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먼지는 여과성(濾過性) 먼지와 응축성(凝縮性) 먼지를 포함한다.
- 6의2. "여과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고체 또는 액체상 태로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6의3. "응축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기체상태로 배출 된 이후 대기 중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즉시 응축되는 먼지 를 말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심사·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	6	
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먼</u>	
	지는 여과성(濾過性) 먼지와	
	응축성(凝縮性) 먼지를 포함	
	<u>한다.</u>	
<u><신 설></u>	6의2. "여과성 먼지"란 대기오	
	염물질배출시설에서 고체 또	
	는 액체상태로 배출되는 먼지	
	<u>를 말한다.</u>	
<u><신 설></u>	6의3. "응축성 먼지"란 대기오	
	염물질배출시설에서 기체상태	
	로 배출된 이후 대기 중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즉시	
	응축되는 먼지를 말한다.	
7. ~ 23. (생 략)	7. ~ 23. (현행과 같음)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	
·평가) ① (생 략)	·평가)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	

② <u>제1항에</u> 따른 심사·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
의 위해성을 심사・평기	<u> </u> 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